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20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정희용 · 이인선 · 고동진
김종양 · 최수진 · 김상훈
김대식 · 임종득 · 박수민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차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1절에 제4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출상환 유예, 이차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8조의9(손해보장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